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제 1 절 개 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법률
2007	68	13	7	5	1	55	18	18	19	-
2008	88	16	3	7	6	61	15	22	24	11
2009	73	15	6	6	3	56	15	19	22	2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제 2 절 법 률

제 1 항 제정 법률

1.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기존 실물 기반의 주식 · 사채 등을 발행 · 유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가 표시된 증권(證券)을 거래자 간 직접 교부 · 이전하거나, 대량의 증권 거래의 경우 집중예탁제도를 통한 계좌 간 대체의 방식을 활용하여야 함. 이러한 현행 제도는 모두 증권의 실물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실물 증권의 제조 · 보관 등에 따른 비용과 분실 · 위조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예탁제도로 수용이 곤란하거나 예탁되지 아니한 실물 증권의 경우 음성적 거래를 초래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실물 증권 없이 주식 · 사채 등의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과 기업환경의 선진화 및 자본시장의 발전 및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5. 10. 23. 국회제출

2016. 3. 3. 국회의결

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공포

※ 공포 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 국채 · 사채 · 수익권 등을 대상

○ 운영체계

-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과, 투자자 주식 등을 위탁받아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이원화 체계를 마련

○ 감독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지정, 전자등록업무규정 제 · 개정 승인, 검사 등 감독권 공동 행사

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2012. 12. 27. 폐지되었으나, 경비교도대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서 정하고 있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1. 16. 국회제출
2016. 5. 19.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군인에 준하여 사망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함

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고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확충 등 중재 관련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한 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2. 27. 법률 제14471호로 공포
2017. 6. 28. 시행

다. 주요내용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제4조)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제6조)

-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제7조)

- 법무부장관은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 2 항 개정 법률

1. 상법(회사편)

가. 추진배경

○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미국 등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회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공개 등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평균 12년이 걸려,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상법 회사편을 개정

나. 추진경과

2014. 10. 6. 국회제출
2015. 11. 12. 국회의결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공포
2016. 3. 2. 시행

다. 주요내용

○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도입

○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및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 확대

○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명문화, 매수의무기간 기산점 일원화

2. 검사징계법

가. 추진배경

○ 검사의 비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 등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12. 4. 국회제출

2015. 12. 8. 국회의결

2016. 1. 6. 법률 제137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3. 민법

가. 추진배경

○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존속기간의 상한을 20년으로 규정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 임대차 존속기간 갱신과 관련된 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2항 역시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6. 5. 국회제출

2015. 12. 9. 국회통과(대안)

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법 제651조(임대차 존속기간) 삭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현행법은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보호관찰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12. 22. 국회제출

2015. 12. 9. 국회통과

2016. 1. 6. 법률 제1371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12조의2)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을 한 법인·단체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2. 13. 국회제출

2015. 12. 9. 국회통과(대안반영폐기)

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공포

2016. 1. 6. 시행

다.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경제적 사정 등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양벌규정 신설

-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등이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등도 벌금형에 처함

6.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5. 국회제출

2015. 12. 9. 국회통과

2016. 1. 6. 법률 제137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적 처리절차"에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9호 신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처리절차 적용(안 제3조제2항)

○ 전자적 불기소 처리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약식명령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하는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5. 22. 국회제출
2015. 12. 31. 국회통과
2016. 1. 19. 법률 제1376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안 제2조제2호)

8. 민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의 개정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7. 28. 국회제출
2016. 1. 8. 국회통과
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공포
2017. 2. 4. 시행

다. 주요내용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

-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

-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부정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함

○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 확대

-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특별대리인 선임사유로 추가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마련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마련

○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

-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 마련

9. 법무사법

가. 추진배경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수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를 신설하여 법무사 법인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1. 5. 국회제출
2016. 1. 8. 국회통과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공포
2016. 8. 4. 시행

다. 주요내용

○ 부수(附隨)사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조 제1항제7호 신설), 법무사가 위임받은 업무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

(안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 요건 완화

10. 외국법자문사법

가. 추진배경

○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협에 등록한 사람)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8. 4. 국회제출

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공포

2016.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합작법무법인 참여 주체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으로 설정(안 제35조의2 신설)

- FTA에서 국내·외 로펌 본사를 합작 사업체 설립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로펌 본사를 참여 주체로 규정

○ 합작법무법인 참여 로펌의 자격 제한(안 제35조의8 신설)

-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 5인 이상 변호사를 보유할 것을 규정

○ 선임외국법자문사 수 제한(안 제35조의11 신설)

- 선임외국법자문사 수가 선임변호사 수를 넘지 않도록 제한

○ 합작법무법인 대표 자격(안 제35조의 13 신설)

-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대표를 선임토록 함

○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율·의결권 제한(안 제35조의 16, 제35조의 17 신설)

-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100 이하로 제한하여 합작법무법인이 사실상 합작참여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 초기 국내 합작참여자의 역할 보장

○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한(안 제35조의19 신설)

-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친족·상속 업무를 업무범위에서 제외
- 업무범위에서 제한된 한국법 자문업무는

합작에 참여하는 한국 로펌이 수행하는 구조로 법률자문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음

○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대리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에게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허용하여 국내 중재산업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1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 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4. 11. 5. 국회제출
2016. 3. 2. 국회통과
2016. 3. 29. 법률 제14102호로 공포
2016. 3. 29.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구조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확대

- 기존 법률구조법인 외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도 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소송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

- 국가소송 수행 공익법무관이 법률자문 업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익법무관 신분규정 정비

-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규정
- 신분상실 규정 정비

○ 복무기간 연장 기준기간 단축

-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기간 연장여부 검토 기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15. 9. 23. 국회제출
2016. 3. 2. 국회통과
2016. 3. 29. 법률 제14105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는 경우 수용정원은 150인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6조)

○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제14조의2)

○ 징계의 종류에 서면사과,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각 TV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를 추가 (제15조)

13.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 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1. 29. 국회제출
2016. 3. 2. 국회통과
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정보화기기에 의한 국민의 출입국심사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국민의 출국 및 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26조, 제46조제1항 제10호의2 및 제94조제17호의2 신설 등)

-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위조 ·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와 이를 알선 · 권유한 자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추가하고, 과태료 대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안 제31조제2항 신설)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33조의2제4호, 안 제46조제1항 제12호의2 신설)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36조,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 마련 (안 제37조의2 신설)

- 외국인등록증 반납, 재입국허가 기간 내 미입국, 등록외국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외국인 관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함

○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안 제70조)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안 제73조 및 제73조의2)

- 운수업자는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예약정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에 탑승하기 부적당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을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 대행제도 도입(안 제76조의5제2항 및 제3항, 안 제76조의8 신설)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 마련(안 제92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기나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증가 추이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예비·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안 제99조제1항)

-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관광상륙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함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6. 9. 국회제출
2016. 5. 19.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69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 현재의 신분관계만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하여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상세증명서'로 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특정 정보만을 선택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 제도 도입

○ 인우보증제도 폐지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2인의 보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나(인우보증), 신분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출생신고 아동의 출생신고적격자 추가

- 부모 등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 및 자치구가 아닌 구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3. 12. 발의
2016. 5. 19.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73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 및 자치구가 아닌 구로 확대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및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개정

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를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5. 22. 국회제출
2016. 5. 19. 국회의결
2016. 5. 29. 법률 제14174호로 공포
2018. 5. 30.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20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 5. 30.부터 3개월로 단축할 예정

17. 중재법

가. 추진배경

○ 증가하는 국제분쟁의 해결절차로 자국 국민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 우려되는 법원의 재판보다, 공정성 및 집행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한 중재가 선호되며,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하므로, 이에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재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을 추진함

나. 추진경과

2015. 10. 8. 국회제출
2016. 4. 28.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중재의 대상 확대

-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

○ 중재합의의 서면성 완화

- '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중재합의 방식에 대한 서면성을 완화

○ 임시적 처분 제도의 정비

- 임시적 처분의 내용,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법원을 통해 이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중재의 신속성, 효율성 확보

○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

- 구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촉탁을 받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결과를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증거조사 방법을 마련

○ 중재비용, 지연이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 중재판정 및 중재합의의 원본·인증등본, 정당하게 인증된 번역문 제출의무 삭제

- 보관이나 제출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각종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의무 삭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개정 UNCITRAL 모델 중재법에 부합하게 보관 및 집행을 위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중재인들의 불편 해소

18. 형법

가. 추진배경

○ 개정 전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불가

- 휴게소 운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2004도2581)

○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15. 11. 5. 국회제출

2016. 5. 19.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공포
2016. 5. 29. 시행

다. 주요내용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그 제3자가 배임수재의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제357조의1 , 3 신설)

19. 형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기록, 확정기록, 확정판결서 등은 열람·복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복사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열람·복사되어 보복범죄에 노출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나. 추진경과

2016. 5. 18. 국회제출
2016. 5. 19. 국회통과
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공포
2016.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규정(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40조)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수형자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수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임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정비함

○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

712, 2015. 12. 23. 선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결수용자 외에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14헌마45, 2016. 5. 26. 선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17. 국회제출 (법사위 대안)
2016. 11. 17. 국회통과
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현행법상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용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개정)이 "전염병"을 "감염병" 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함에 따라 형집행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함

○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도주,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1. 난민법

가. 추진배경

○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뇌물죄 등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6. 9. 8. 국회제출
2016. 12. 1. 국회통과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로 공포
2016. 12. 20. 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8. 18. 국회제출

2016. 12. 1. 국회통과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안 제42조제1항 단서)

-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안 제45조제1항)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함

○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안 제45조제5항)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특정범죄'의 적용범위는 강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전통형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뇌물죄 등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기업범죄 등 내부자 증언이 중요한 '현대형 범죄'에서 내부 신고자 보호 등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 감면제 등 도입 필요

나. 추진경과

2016. 10. 28. 국회제출 (법사위 대안)
2016. 12. 1. 국회통과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로 공포
2016. 12. 20. 시행

다. 주요내용

○ 신고자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상 부패범죄, 업무상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등 추가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지도감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하거나 준수사항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8. 2. 국회제출
2016. 12. 1. 국회통과
2016. 12. 20. 법률 제144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 보호관찰도 가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제 3 절 대 통 령 령

제 1 항 제 정 령

1.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을 폐지하고,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170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급여금 지급액의 기준을「군인연금법」상 사망급여금 지급액으로 하여, 군인과 경비교도 간에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1급, 2급부터 5급까지,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상이급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함

○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구분하여 부상이나 사망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함

제 2 항 개 정 령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보호사건 등의 가사소송 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2877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집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5호로 공포
2016.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2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구체화(제3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 변경 등의 청구 및 요청 절차 마련(제4조)

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解囑)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소속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1호로 시행·공포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임기규정의 정비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정비 및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의 규정 마련

3.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검사 80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검 및 지청 검사로 배정

나. 추진경과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80명 중 2명은 부장검사로, 나머지 78명은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배정

○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 추가 배치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구지검 및 광주지검에 부장검사 각각 추가 배치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방위사업 비리 근절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나. 추진경과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각각 신설

5. 가석방자관리규정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가석방자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가석방자보다 더 많은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개선하여 국내 주거지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

○ 국외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이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개선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국외 이주나 1개월 이상 여행 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찰청 인력관리 효율성 향상

나. 추진경과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1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의 5급 정원 1명을 4·5급 정원으로, 연구사 정원 3명을 연구관 정원 3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5급 정원

1명을 4·5급으로, 6급 정원 12명을 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을 추가하고,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구조 업무 수행 법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3. 30. 대통령령 제2707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구조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확대한 개정법 반영

- 기존 법률구조법인 외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에도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국가소송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개정법 반영

-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를 '국가소송 등의 사무'로 개정하는 등 국가소송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 관련 규정 정비

○ 공익법무관 배치대상 법률구조법인 추가

- 공익법무관 배치대상 법률구조법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법무관 배치근거 명시

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범위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촉(解囑)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로 공포
2016. 3. 31. 시행

다. 주요내용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서울특별시는 3천200만원 이하에서 3천4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1천500

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9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
- 보증금 4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세종특별자치시를,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시와 같은 지역으로 분류

○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신설 및 해촉(解囑) 기준 정비

-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
-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해촉 기준을 정비

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나. 추진경과

2016. 4. 5. 대통령령 제2708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각각 3.4% 인상

1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범죄수익환수 및 사이버수사 인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형사조정 등 인력 증원

나. 추진경과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4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 및 사이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형사조정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압수 및 분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 증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8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조정하며, 대검찰청 5급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재배정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月借賃)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7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율을 연 3.5%로 규정

나. 추진경과

2016. 5. 29. 대통령령 제27614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로 규정

12.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위임된 사항 관련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1호로 공포
2016. 7. 1. 시행

다. 주요내용

○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 갱신, 정관변경 및 등기 절차 등 규정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수형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858, 2015. 11. 2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용자의 일반 접견 외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회당 60분으로, 월 4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정시설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보장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7. 5. 대통령령 제2730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

○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을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보호소년 · 위탁소년 · 유치소년의 규율위반 행위의 구체적 태양(態樣)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

○ 이에 따라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하고, 규율 위반 행위 등 법률로 상향규정 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또한 소년원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시설 운영을 소년보호협회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나. 추진경과

2016. 9. 5. 대통령령 제27479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함 (제5조의2)

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의

일부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0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심사 절차의 간소화(안 제1조, 제1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시나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7조 신설)
- 등록외국인이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를 정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사실을 기재하고,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등록사항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대행사무 범위 등(안 제88조의10)
-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인의 신원확인 등 심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교부, 수수료의 징수 등의 사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도록 함

○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의 위임(안 제96조제1항)
- 출입국심사,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및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함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이전 신고·접수 등의 업무처리 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1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이전신고 접수·처리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를 시·군·구 외에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18.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신설하는 근거 마련

나. 추진경과

2016. 11. 8. 대통령령 제27574호로 공포
2017.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중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관할하는 서부지청 신설

19. 국가배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1호로 공포
2016. 11. 15. 시행

다. 주요내용

○ 본부배상심의회 등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본부배상심의회 등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심의회 등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2호로 공포
2016. 11. 15. 시행

다. 주요내용

○ 제명을 띄어쓰기 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소관행정청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590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부채규모 기준을 500억 원으로 정함

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 5. 29.일부개정, '16. 11. 30.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입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추진경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5호로 공포
2016. 11.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를 규정

-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를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로 규정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신청 및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을 규정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23. 치료감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공포 2016. 12. 2. 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법」의 제명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32조 신설)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및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나. 추진경과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69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검사정원을 증원하도록 한 「검사정원법」 시행에 따라 2016년도에 증원된 검사 80명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76명 증원

○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인력 4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인력 71명을 감축

2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협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잠입 또는 탈출에 대한 신고 상금을 일반 상금으로 단일화하여 상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

○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 원에 포함하여 일원화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를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관

나. 추진경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286명 증원

제 4 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 1 항 제정 규칙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신설됨(2016. 10. 11.)

○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0. 14. 법무부령 제87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총 5개 조문으로 구성,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원칙, 보존기간, 보존·관리 방법 등을 명시

제 2 항 개정 규칙

1.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추진경과

2016. 2. 12. 법무부령 제86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원이 건강상 사유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가능

○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수당을 정하도록

하고, 여비·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형사조정의 과정 및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 절차에 관련된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2. 12. 법무부령 제862호로 시행·공포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형사조정수당을 정하고, 여비·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형사조정조서 및 형사조정결정문 서식 마련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신설하여 헌법가치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9명을 증원하며, 대전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각각 신설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법무부에 아동 인권보호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병동 운영에 필요한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5급 정원 3명 등 총 13명을 직급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3. 2. 법무부령 제86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4.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가. 추진배경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3. 25. 법무부령 제86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신설

○ 위촉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 마련

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행정서식의 보존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질(紙質) 및 편집 용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생년월일의 기재로 대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4. 1. 법무부령 제8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상) 및 제22호의3서식(외래진료 비용 지급 청구서)의 지질 및 편집 용지 규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6.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의 배치기관이 확대되고 국가소송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

나. 추진경과

2016. 3. 31. 법무부령 제86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가소송 공익법무관 업무범위 확대한 개정법 반영

○ 현행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 정비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인정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4명을 증원하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해출장소를 신설하여 김해지역의 내·외국인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감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혈액투석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4명과 수용자에 대한 식품위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소속 김해출장소의 관할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각각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5. 10. 법무부령 제86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주민센터 등의 기관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 부여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에 처리하도록 함
○ 또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5. 23. 법무부령 제8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규칙 제1조2의 제1호에 '전자계약증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 전자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부칙 개정

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외국법자문사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 적합성 여부 확인 및 해촉 규정 도입을 통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나. 추진경과

2016. 6. 28. 법무부령 제86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법자문사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진단 위한 사전진단서 작성 의무 도입

○ 외국법자문사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해촉 규정 도입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수형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2012헌마858, 2015. 11. 26. 선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解囑)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 취업지원협의회, 징벌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 대한 접견 신청 절차, 시간 연장 및 접견횟수 추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취업지원협의회, 징벌위원회, 교정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심신장애, 직무 관련 비위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열어주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303호, 2016. 7.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7. 5. 법무부령 제87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위임

○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경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로 늘리고,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 외국인의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과 그 외의 지역 입국용으로 구분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용 입국신고서에 체류기간,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

12. 외국인보호규칙

가. 추진배경

○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보호외국인의 인권강화를 위하여 환자·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을 이동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1. 법무부령 제872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의 환자·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정비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각종 중독 범죄 수용자나 상습 폭력 수용자 등 고위험 수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지방교정청 정원 10명을 법무부로 재배정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며,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신설하고, 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의 중징계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을 지방교정청에서 법무부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재배정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심리치료과장은 수용자의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분류센터장은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도록 하며, 지방교정청의 의료분류과 및 직업훈련과를 폐지하여 그 분장사무를 보안과 및 사회복귀과로 통폐합하는 등 지방교정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5. 법무부령 제87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 → 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29. 법무부령 제874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기관을 시·군·구 이외에 읍·면·동으로 확대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0호, 2016. 9. 29. 공포, 2016. 9. 30.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9. 29. 법무부령 제875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 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마련(안 제49조의3 신설)

- 등록외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4 신설)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소년원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종류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105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전자장비의 종류와 새로 도입 되는 징계의 구체적 기준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정착 지도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16. 9. 29. 법무부령 제876호로 공포
2016. 9. 30. 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종류에 CCTV 외에 전자감지기, 전자명찰, 물품검색기, 증거수집장비(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등) 등을 추가 (제24조의4)

1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2명을 증원하고, 불법환승객 등의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안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20명을 증원하며, 공항 보안 강화 및 출입국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등 법무부 소속기관에 보안관리 및 출입국심사인력 등 29명을 증원하고,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임용 증가에 따라 예비검사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검사 교수 8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공항 내 보안취약지역의 순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지원과장의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0. 11. 법무부령 제877호로 공포 · 시행

다. 주요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8.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

나. 추진경과

2016. 10. 19. 법무부령 제87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를 '전자적 약식사건'에서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변경

19.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

나. 추진경과

2016. 10. 19. 법무부령 제8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를 '전자적 약식사건'에서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변경

2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의 제복 중 근무복인 정복·기동복 등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부속물의 종류를 단화·와이셔츠·블라우스 및 명찰로 단순화하며, 종전에는 평상시 근무 할 때에 정복을 착용하던 것을 평상시에도 기동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활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16. 10. 21 법무부령 제8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제복의 종류 및 제식 변경
○ 정복의 차림 규정 신설
○ 기동복 착용 시기에 관한 규정 정비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가. 추진배경

○ 잡곡류 혼합비율 기준을 폐지하여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별로 자율적으로 주식 혼합 여부 및 혼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복·이불 등을 내용연수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되, 피복 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 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필·볼펜·지우개 등 문구용품의 연간 급여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적정한 수로 하여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16. 10. 31. 법무부령 제88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주식 혼합식 및 혼합비율 기준 폐지
○ 피복·침구 등의 급여기준 정비

22.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추진경과

2016. 12. 2. 법무부령 제88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변경

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률의 제명을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공포, 2016.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독자재활시설, 정신보건센터 등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할 때 제출할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2. 2. 법무부령 제88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법」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치료감호법 시행령」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

○ 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제41조제1항, 제2항)

○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여행지"로 변경 등

2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력 5명과 그 소속기관 인력 80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28명을 행정직군 6명 및 기술직군 22명으로 전환하고, 치료감호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소 보건직 7명을 보건직 또는 의료기술직 7명으로 전환하며,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2. 30. 법무부령 제8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2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면제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하여 구축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12. 30. 법무부령 제8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규칙 제8조 제3항 제10호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면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칙 개정